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26.6.11.)
- ②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26.6.15.)
- ③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26.6.22.)
- ④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26.6.23.)
- ⑤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26.6.29.)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가짜 정산서류, 허위인력 등록”... 연구개발비 편취 행위 ‘심각’

-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 산업·자원분야 48건 접수...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가장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159건) 대비 76.7% 증가했다.

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19건)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 한편, 최근 2년('24~'25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금액은 총 233억 원에 달한다.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주요 사례〉

구분	사례
연구재료 구매 서류 조작	ㄱ업체는 3개 연구기관의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사가 생산하는 양산용 제품의 원료를 내부거래로 구매하고, 이를 연구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짜 정산자료를 만들어 연구기관을 속여 약 34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연구 인력 허위 등록	자동차 모터 제작 업체인 ㄴ업체는 자동차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고, 직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 5억 6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8억 6천만 원 부과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ㄷ업체는 정부로부터 패션산업 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주받아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를 과제와 무관한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 5억 5천만 원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1억 8천만 원 부과
연구 계획 허위 작성	ㄹ업체는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계획서를 꾸며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연구개발비 수급 → 3억 6,000만 원 환수처분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자원인 만큼 한 톨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정수급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책임을 묻는 한편, 투명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6.15.~6.29.)
- 올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 2018년 4,386건→2024년 1,357건(2025년 수치는 현재 집계 중)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

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9월에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 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청렴한 첫 걸음,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에서 시작!”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출범 계기로 신규 선출직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 등 부패방지 제도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9기 출범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제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 지방정부, 지방의회 및 교육청에 새롭게 취임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른 부패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각 기관에 안내한다.

〈 국민권익위 소관 부패방지 제도 주요 안내사항 〉

구분	주요 안내사항
이해충돌방지법	▶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 신고자등 비밀보장의무,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제도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범위, 외부강의등 제한 및 신고의무
공직자 행동강령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권 개입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경조사 통지 제한 등

-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이행해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알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인허가, 심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하며,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가 부패방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배포, 이해충돌방지법 홍보 영상 송출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는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라면서, “새로 출범하는 민선 9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청렴하고 깨끗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향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대상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현행 1시간당 40만원(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현행 1시간당 40만원, 최대 60만원에서 1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행법상 대학교수, 교사 등도 1시간당 100만원으로 되어있음

-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와 대학교 등의 교원 간에 유사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차이가 있어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과학기술분야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등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모니터링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불편 개선 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 국민권익위,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전체 공직자 96.7%, 고위직 97.8% 부패방지교육 이수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동안 공직사회에 부패방지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확인…부패방지교육 이수율 부진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 및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가 2,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부패방지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96.7%로, 대상 공직자 총 183만 명 중 177만 명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부패방지교육이 공직사회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도 공직자 교육 이수율은 96.7%로 2024년 대비 0.7%p 상승했으며, 2016년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이후 최초 집계한 이수율 85.3%와 비교했을 때 11.4%p가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교육이수율은 97.8%로 전년 대비 0.7%p 상승했고, 신규·승진자는 92.6%로 전년 대비 0.2%p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교육이수율은 교육청이 전체공직자 99.1%로 가장 높은 반면, 국·공립대는 83.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수율이 부진한 국·공립대에 대해서는 분기별 교육실적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관리를 통해 이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 분	전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대
전체 이수율	96.7%	99.1%	83.0%
고위공직자 이수율	97.8%	99.8%	93.8%
신규·승진자 이수율	92.6%	98.3%	86.8%

□ 또한, 전체 공공기관 2,242개 중 958개 기관(42.7%)은 교육 이수율이 100%지만 130개 기관은 교육 부진기관*으로 파악됐다. 부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7월 중 교육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서장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전체공직자 75% 미만, 고위공직자 80% 미만, 신규·승진자 80% 미만 기준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기관

* 부진기관 수는 최근 3년간 지속 감소(268개^{'23년}→153개^{'24년}→130개^{'25년})

특히, 130개 부진기관의 49.2%에 해당하는 64개 기관이 50명 이하 소규모 기관 또는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평균 이수율은 전체공직자 64.5%, 고위공직자 58.9%, 신규·승진자 44.8%로 비교적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반부패법령 특별교육 자료’를 배포했고,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 : 국민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주요 반부패 법령에 대해 2시간의 강의를 지원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부패방지교육이 의무화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전체 공직자의 교육 이수율이 96.7%에 달하는 등 부패방지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패방지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이수율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협약체결→기부(공공기관)→위기가정 발굴(위원회)→긴급 생계비 지원(사회복지협의회)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